

제 호

**석유판매업(일반대리점·용제대리점·주유소·용제판매소·
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·부생연료유판매소) 등록증**

1. 성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2. 상호:
3. 소재지:
4. 취급유종:
5. 저장시설의 수: 주유기의 수: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·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